

#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11.06.30

개정 : 2011.11.22

개정 : 2014.11.01

개정 : 2021.03.01

개정 : 2021.12.0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소속 구성원들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2., 2021. 12. 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01.>

1. “연구 부정행위” (이하 ” 부정행위 “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1. 12. 01.>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01.>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01.>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01.>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01.>

마.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01.>

바.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개정 2021. 12. 01.>

사.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개정 2021. 12. 01.>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지원기관, 위원회 또는 연구지원과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01.>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지원기관, 위원회, 연구지원과 등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01.>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1. 03. 01., 2021. 12. 01.>

5.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1. 12. 01.>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1. 12. 0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연구 또는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연구원 및 교원 신규 채용자 그리고 연구비 등과 관련하여 본교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12. 01.>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운영) ① 연구윤리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01., 2021. 12. 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0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01.>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5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개정 2021. 12. 01.>

② 총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받은 과제로서 다른 연구기관의 구성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다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진실성 검증 절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 또는 관련부서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등 세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1., 2021. 12. 01.>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된 팀에서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21. 12. 01.>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만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본조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 17조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④ 예비조사는 관련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1.>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③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본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1명 이상 위촉한다. <개정 2021. 12. 01.>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01.>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기관장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자체 조사, 각종 자료, 의견진술,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도 즉시 연구지원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 12. 01.>

제2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징계상신
2. 연구 부정행위 관련 연구과제 수행중단
3. 해당 과제연구비 회수
4. 3년 이내 공공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5. 3년 이내 해외연구년제 파견제한
6. 3년 이내 교내학술연구비 신청제한
7. 3년 이내 교내우수논문상 등 연구관련 수상 제한
8. 총장 행정지도 (경고, 주의)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위원회,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④ 위원회는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나 진술을 하였을 경우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청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교무팀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